Text 조사우수사례 평가 보고서

Text **('25上 평가번호 : 29)**

Special

개인·법인	업종(코드)	조사유형	외형구간	조사청
법인	서비스(543254)	정기	1조원 이상	지방청

Text I 조사성과(결과)

Text 가. 조사대상 개요

Text ○ 조사법인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글로벌 그룹의 한국

Text 자회사로 자매회사인 'AAA(미국법인)'로부터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매하여

Text 국내에 재판매

Text * 사용자가 서버 등 자체 인프라를 관리하는 대신 인터넷을 통해 컴퓨팅, 저장, 데이터베이스, Text 네트워킹, 분석, 인공지능, 어플리케이션 개발, 구축 및 관리 등을 서비스

Text 나. 적출성과

Text ○ 주요 적출 내역

Special

ıl	연번	조사항목	코드	적출요지(결정경정 사유)
	1)	부가가치세 매출 과소신고	20701	AAA(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조사법인에게 국내 데이터센터 관련 매출세금계산서를 과소발급하여, 관련인 선정하여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과세
	2	기타 감가상각비 손금부인	10904	AAA(미국법인)로부터 양수한 한국 내 '고객계약'을 법인세법상 무형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 과다 계상분 손금부인
	3	이전가격	18003	AAA(미국법인)과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재판매 계약을 맺고 지급한 대가 과다지급에 대한 이전 소득조정
	4	과다경비 등 부인	11204	국내 특수관계법인에게 임차료 등 공통비용을 안분하지 아니한 과다경비 부인

Text ○ (최초 적출사례) 직전 조사시 우리청의 한국 내 고정사업장 과세 이후 동일

Text 과세 이슈 회피를 위해 대형 로펌의 컨설팅을 기반으로 기업구조를 개편하고

Text 국내법인인 조사법인이 Buy&Sell(재판매)하는 형식으로 거래구조를 변경

Text 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징수방법과 '고객계약'의 무형자산 양수도 등

Text 새로운 이슈에 대하여 과세쟁점을 개발·검증하여 불복 없이 조사 종결함

Tex II 조사노하우

Special

적출①

❖ 부가가치세 매출 과소신고 (항목코드: 11207)

AAA(미국법인)의 국내지점 부가가치세 매출과소신고

Text **1. 조사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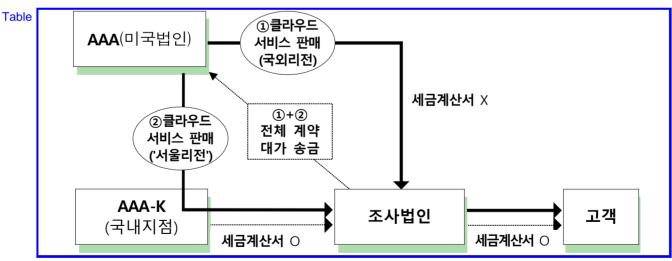
Text 가. 착안사항 도출 과정

Text (기업구조 변경) AAA(미국법인)의 고정사업장 귀속소득 과세 이후 '20.12.1.자로 Text 기업구조개편을 단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클라우드 서비스의 국내 공급자를 Text (AAA(미국법인)에서 조사법인으로 변경함 [그림1]

Text 신고대상 구분) (정자적 욧역의 AAA(미국법인)가 조사법인에 클라우드 Text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서울리전'을 통한 판매(②)만 AAA(미국법인)의 국내 Text 기점인 AAA-K가 재판매업자 조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외 규정에 통하 판매(①)는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따라 Text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아니함

Text - 조사법인은 클라우드 서비스 판매대가 전부(①+②)를 AAA(미국법인)에 지급함

Text < 클라우드 서비스의 VAT상 세금계산서 발급현황(구조변경 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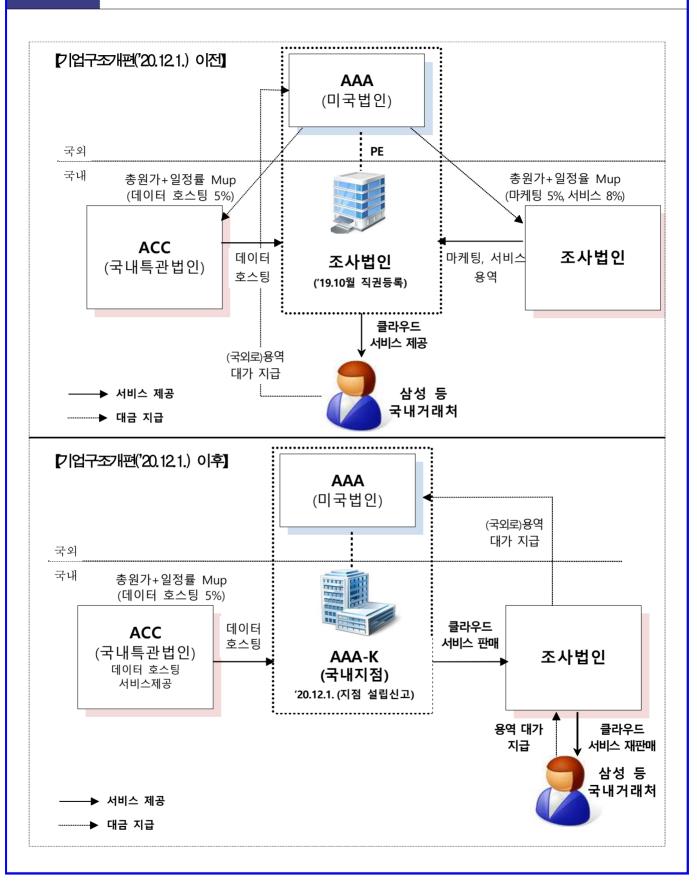
Text \nearrow 구조개편 전 세금계산서 교부 없음(AAA \rightarrow 국내 고객)

Text O AAA(미국법인) 국내지점인 AAA-K가 국내 '서울리전' 관련 분에 한정하여

Text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유는 국내 데이터센터인 '서울리전'을 통한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만이 신고대상이라고 소명하여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검토를
통해 신고내용 검증 필요

[그림1]

거래구조 변경



Text 나. 착안사항 관련 법령 검토

Table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53조, 제53조의 2 및 제60조 제1항에서 "국외사업자"라 한다)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 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 1. 「소득세법」제120조 또는 「법인세법」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Table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5조 [대리납부]

- ④ 법 제52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소득세법」제15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또는 「법인세법」제9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
-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용역등의 제공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

Table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1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Table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용역의 공급장소]

-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 3.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적 용역의 경우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 주소지 또는 거소지

Text 2. 조사기법

Text 가. 적출항목 조사 방법

Text O 전자적 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논리 개발

Table (1)(2)(3)(4) 국내 국내 사업장 사업자 과세궈 매출신고 사업장 파다 파다 관련성 유무

Text - (① 사업자 판단) AAA(미국법인)는 시애틀 본사에서 글로벌 웹 서비스 사업을 Text 주도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 국외사업자임

Text - (② 과세권 판단)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 여부는 Text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공급장소)를 기준으로 판단(대법원 2006.06.16.선고 2004두7528)

Table 판례 대법원-2004-두-7528 (2006.06.16.)

SWIFT(국제은행간금융조직통신) 통신망 접속 및 메시지의 전송이 이루어지는 곳은 국내 금융 기관의 국내 점포이므로 그 용역의 제공장소는 국내라 할 것이고, SWIFT 통신망을 이용한 메시지 전송 및 저장의 기계적 또는 기술적 작업이 해외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음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 하고 있으므로,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 여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

Text - (③ 고정사업장 유무) 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장소를 국내 Text 사업장으로 하고 그 중 하나로 지점을 규정하고 있음

Text - AAA-K는 AAA(미국법인)의 국내 지점으로 AAA(미국법인)는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음

Table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 ① 사업자의 <u>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u>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Table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사업장)

⑥ 사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고,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Table 법령 법인세법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Text - (④ 사업장 관련성) AAA-K가 국내 '서울리전' 관련 분에 한정하여 세금

Text 계산서를 발급한 이유는, AAA-K가 단지 '서울리전'을 이용한 (즉, 국내

Text 데이터센터를 통한)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에만 '관련'이 있었기 때문임

Text - AAA-K는 AAA-K와 ACC 간 데이터 호스팅 서비스 계약에 따라, AAA

Text (미국법인)를 위하여 ACC로부터 '서울리전' 부분에 관한 데이터 호스팅 서비스를

Text 조달하며, ACC는 오직 한국의 데이터센터, 서버와 관련된 장비의 소유, 관리 및

Text 운영에 책임을 짐

Text - AAA-K는 국내 데이터센터인 '서울리전'을 통해 AAA(미국법인)가 공급하는 클라

Text 우드 서비스에 대하여만 관련되어 있고, 해외 데이터센터인 'Non-서울리전'들을

Text 통해 AAA(미국법인)가 공급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에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

Text 나. 조사법인이 고객에게 제공한 국내 데이터센터를 통한 서비스 내역 검증

Text ○ (국내 데이터센터:'서울리전' 관련 용역) 조사법인은 조사법인이 국내

Text 고객에게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고객이 선택한 국내·외 리전*을 통해

Text 제공되고 리전별 사용량과 요율을 반영하여 사용금액을 청구하므로 '서울

Text 리전' 사용분과 '서울리전' 외 사용분으로 구분하여 신고함

Text * 여러 개의 데이터센터(서버 보유)로 이루어진 물리적인 장소

Text - 클라우드 서비스 재판매용역에 대한 계약내용, 실제 용역 방식 등에 대한

Text 구체적인 사실관계, 동종업종 인터뷰, 전자적 용역 공급 관련 학회 논문

Text 등 종합적으로 판단한 바 해당 용역이 국내사업장을 통해 제공되었는지

Text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 있으므로

Text - '서울리전' 사용분 산출내역이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해 AAA-K가 발급한 Text 대출세금계산서 산정내역과 고객이 선택·사용한 리전별 과금내역을 검토 Text 하여 AAA-K의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내용이 적정한지 검토하기 위해 Text 국내·외 리전별 상세 과금내역 자료 요청

Text 다. 핵심 증거자료 확보

Text ○ 조사법인은 리전별로 사용량이 별도로 측정되므로 '서울리전'과 관련된 부분만

Text 세금계산서 발급이 적정하다고 소명하므로 조사팀은 아래 세금계산서 발급

Text 비율이 '서울리전' 사용분이라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요청하였으나 보관·

Text 비치하고 있지 아니하는 등, 즉시 제출하지 못함

Text < AAA-K가 발행한 '서울리전' 관련 매출세금계산서 발급비율>

Table	구 분	'21.1기	'21.27	'22.1기	'22.27	'23.1기	'23.27	'24.1기
	당초'서울[전 비율	40.2%	38.4%	49.9%	37.0%	44.5%	43.1%	43.2%

Text - 이에 조사팀은 직전 PE 조사 이후 변경된 거래구조 하의 조사법인의 신고

Text 방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리전별·고객별 사용량에 대한 근거가 취약하다는

Text 사실을 납세자가 인정하도록 하였고, 전 세계 해외 소재 리전의 사용량

Text 전체는 제출이 어렵다는 납세자를 끈질기게 설득하여 객관적 자료제출을

Text 독려하여 납세자 주장을 스스로 입증하도록 함

Text - 조사법인이 최종소비자에게 과금된 클라우드 서비스 전체 사용금액을 고객이 Text 선택한 리전별(총 전세계 43개 리전)로 구분된 고객별 과금 내역을 제출 Text 받아 검토한 바, 당초 신고한 ①'서울리전' 사용비율이 실제 대비 과소하게 Text 산정되거나 ②리전 공통 서비스의 안분 부적정으로 인하여 AAA-K가 Text 매출세금계산서를 과소 발급하고 조사법인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과소 수취한 Text 내역을 확인해

Text < 전 세계 리전별·고객별 세금계산서 발행대상 재계산 >

□ o rese	ller fee (A)	USD 600 mi
	Net cloud services revenue related to the use of region (B)	USD 500 mi
net revenue breakdown	Net cloud services revenue related to the use of non-regions (C)	USD 450 mi
	Human services revenue which do not need to use of data centers (D)	USD 50 mil

ı	а	h	e
٠	~	~	

Region name			
Airport code	(C+-D	Airport code	City, Country
ARN	(Ctrl) ▼ veden	KIX	Osaka, Japan
ATL	Atlanta, USA	LAX	Los Angeles, USA
BAH	Bahrain	LHR	London, United Kingdom
BJS	Beijing, China	MEL	Melbourne, Australia
BKK	Bangkok, Thailand	MIA	Miami, USA
BOM	Mumbai, India	MNL	Manilla, Philippines
CDG	Paris, France	MXP	Milan, Italy
CGK	Jakarta, Indonesia	NRT	Tokyo, Japan
CHI	Chicago, USA	NYC	New York, USA
СМН	Columbus, USA	OSU	Ohio, USA
CPT	Cape Town, South Africa	PDX	Portland, USA
DEL	Delhi, India	SFO	San Francisco, USA
DEN	Denver, USA	SIN	Singapore
DFW	Dallas, USA	SKT	Sialkot, Pakistan
DUB	Dublin, Ireland	SYD	Sydney, Australia
DXB	Dubai, UAE	TLV	Tel Avivm Israel
FRA	Frankfurt, Germany	TPE	Taipei, Taiwan
GRU	Sao Paulo, Brazil	VZE	Frazer Lake, USA
HAM	Hamburg, Germany	vzw	Cape Greig, USA
HEL	Helsinki, Finland	WAW	Warsaw, Poland
HIO	Hillsboro, USA	YUL	Montreal, Canada
HKG	Hong Kong	YYC	Calgary, Canada
HYD	Hyderabad, India	ZAZ	Zaragoza, Spain
IAD	Washington DC, USA	ZHY	Ningxia, China
ICN	Seoul, S. Korea	ZRH	Zurich, Switzerland

┰∽	h	
1 a	u	ıe

Summary by month (usage period)								
	2020	2021	2021	2021	2021	2021	2021	2
(Unit: USD)	December	January	February	March	April	May	June	J
ICN	40,265,509	41,408,813	39,902,144	47,848,359	45,985,352	49,980,680	47,812,998	50
Non-ICN	43,400,069	43,536,685	35,201,574	47,194,503	43,047,755	52,841,107	50,111,588	53
Subtotal	83,665,577	84,945,498	75,103,719	95,042,862	89,033,108	102,821,786	97,924,586	103
Miscellaneous N/A	9		1,990	is	3.5	18	995 -	9
Total	83,665,577	84,945,498	75,105,709	95,042,862	89,033,108	102,821,786	97,925,581	103
Revised ICN including allocated Miscellaneous N/A	40,265,509	41,408,813	39,903,201	47,848,359	45,985,352	49,980,680	47,813,484	50
Total	83,665,577	84,945,498	75,105,709	95,042,862	89,033,108	102,821,786	97,925,581	103
% Revised ICN including allocated Miscellaneous N/A	48.1%	48.7%	53.1%	50.3%	51.6%	48.6%	48.8%	- Sinte
Recon with segemented PL					otal _	530,614,540 50.0%		
	0 Dec. FY2021	FY2022	FY2023					
Total reveue per monthly data (USD)	83,665,577 1,220,235,110	1,577,039,716	1,715,974,598					
Average F/X rate (per KEB Hana bank)	1,095.13 1,144.42	1,291.95	1,305.41					
Converted to KRW in mil.	91,625 1,396,461	2,037,456	2,240,050					
rd party revenue per segmented PL (KRW	90,150 1,347,857	1,963,339	2,155,828					
Differecne %	1.6% 3.5%	3.6%	3.8%					

Text - 조사법인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내역은 '서울리전'을 사용한 Text 서비스, 국외리전을 사용한 서비스, 휴먼 서비스(실제 직원이 컨설팅, 오류수정 Text 등 용역제공) 3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 제출한 '서울리전' 사용비율의 세부 집계 Text 내역을 확인한 바 과소하게 산출된 내역을 확인하고 과소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 Text 과세표주을 산정함

Text 다라서 매출자인 AAA-K에 대해서는 매출세금계산서 과소 발급 혐의금액에 Text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검증을 위해 관련인으로 조사대상 선정하여 아래와 Text 같이 과소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 823,090백만원에 대해 Text 부가가치세 101,158백만원 추정함

Text - 추가적으로 매입자인 조사법인이 매입세금계산서 과소 수취 것으로 확인
Text 되므로 각 과세기간별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증명서류 미수취금액
Text x2%) 한도금액 1억원씩 과세함

Text < AAA-K의 매출세금계산서 과소 발급 내역 >

(백마워)

_										
able		구 분	합 계	'21.1기	'21.2기	'22.1기	'22.27	'23.1기	'23.2기	'24.1기
	1	클라우드 매입대가	5,646,375	454,838	633,878	743,623	891,780	843,036	957,278	1,121,943
	2)	당초 세금계산서	2,388,337	182,561	243,651	369,922	328,590	372,157	408,129	483,327
		발급금액	_,555,55	40.2%	38.4%	49.9%	37.0%	44.5%	43.1%	43.2%
	3	실제 사용 비율	_	50.0%	49.3%	55.4%	57.2%	59.0%	59.3%	61.0%
	4	실제 비율에 따른 발급금액 (①×③)	3,197,729	227,418	312,784	410,754	507,957	493,136	561,901	683,779
	(5)	과소 발급 금액 (④ - ②)	823,090	44,858	68,851	42,045	181,508	125,234	159,537	201,058

Text < 부가가치세 추징세액 >

(백만원)

Table

е	구 분	합계	'21.1기	'21.2기	'22.1기	'22.27	'23.1기	'23.2기	'24.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823,090	44,858	68,851	42,045	181,508	125,234	159,537	201,058
	추징세액	101,158	6,302	9,303	5,550	22,893	15,328	18,853	22,929

Text 마. 도전적 과세 및 처분 유지

Text 로펌의 Tax Plan으로 무장한 거대 최고 대형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Text 조사항목에 대한 법령 검토, 세법 해석자료, 심판례 등의 법적 과세근거와 인터뷰 등 Text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업체 현장정보의 국내 Text 기반하여 탄탄한 과세논리를 개발하고.

Text - 전 세계 40여개의 리전별 과금 내역의 상세내역을 집중 조사하는 등 Text 실제 데이터 검증을 통해 객관적 과세논리를 구축해 나갔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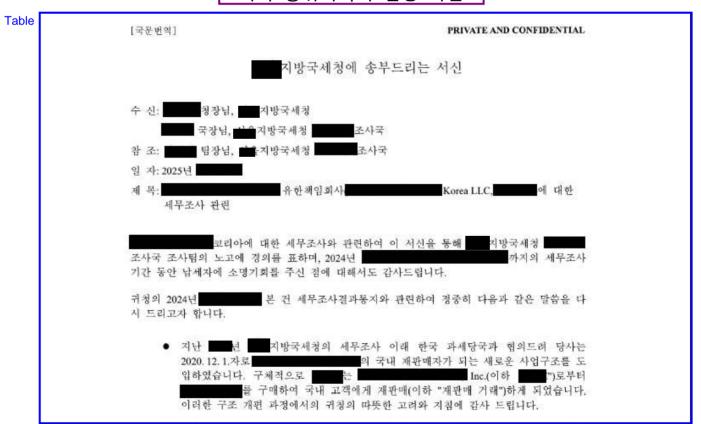
Text - 조사법인에 충분한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여 납세자의 타당성 있는 주장은

Text 수용하면서도 납세자가 스스로 검증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핵심 증거자료를

Text 확보함

Text 조사법인이 과세의 타당성을 인정(미국 상위회사의 인정서신 Text 하고 없이 불복 조사종결 1.017억원 이상의 거액의 고지세액 전액을 Text 납기 현금 납부함 내

Text < 미국 상위회사의 인정 서신 >



Special

❖ 기타무형자산 상각 적정 여부 (항목코드: 10904) 적출② 기업구조개편으로 인해 양수한 '고객계약'을 세법상 기타무형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 과다계상분 손금부인

Text **1. 조사착안**

가, 착안사항 도출 과정

Text ○ (거래구조 변경) AAA(미국법인)의 고정사업장 관련 직전 조사 후 '20.12.1. Text 자로 기업구조개편을 단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클라우드 서비스의 국내 Text 공급자를 AAA(미국법인)에서 조사법인으로 변경함

Text < 거래구조 개편>

Table	구조 개편 전	AAA(미국법인)	\rightarrow	국내	고객(최종	사용자)
	구조 개편 후	AAA(미국법인) →	조사법인	→ 국내	고객(최종	사용자)

Text (('고객계약' 이전) 기업구조개편 이후 조사법인은 AAA(미국법인)와 재판매 Text 계약을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의 제공업자로 변경되어 국내 고객과 직접 Text 서비스 판매계약을 체결하게 됨에 따라,

Text - 기존 AAA(미국법인)와 국내 고객간 체결한 '고객 계약'을 '20.12.1.에 이전 하는 "Contract Transfer Agreement"를 체결하고 'With and ^{Text} Without Method(이하 'WWM') 방식*으로 평가하여, 취득가액 361억원의 Text 기타자산으로 계상함

Text * 각 시나리오별 현금흐름 계산하여 그 차액의 현재가치를 양수가액으로 산정

Text - 해당 자산이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무형자산)에 해당하는지와 적용한 Text 내용연수의 법적 근거에 대해 검토

Text 나. 착안사항 관련 법령 검토

Table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 가. <u>영업권(</u>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Table

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① 영 제2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 1.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Text **2**. 조사기법

Text 가. 적출항목 조사 방법

Text O 과세논리개발

Text - (① 법인세법상 무형자산) 조사법인은 양수한 '고객계약'을 기타자산으로

Text 계상하고 아래와 같이 임의상각 하였으나 조사팀은 '고객계약'을 법인세법

Text 시행령 제24조의 무형자산에 해당하여 영업권 감가상각 내용연수 5년을

Text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함

Text < 기타자산 임의상각비 계상내역 >

(백만원)

Table

Э	구 분	2020	2021	2022
	(기초)기타자산	36,150	34,945	20,485
	(임의상각비)	1,205	14,460	14,460
	(기말)기타자산	34,945	20,485	6,025

Text - (기업회계기준) '고객계약'은 기업에서 분리하여 매각·이전·교환 등이

Text 가능한 ①식별가능한 자산에 해당하며, 해당 자원에서 미래 경제적 효익에

Text <mark>대한 제3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②자원에 대해 통제 가능하며,</mark>

Text 해당 자산의 사용으로 매출 등의 ③미래경제적 효익이 발생하므로

Text 기업회계기준의 무형자산 정의에 부합함

Text - (재화의 공급) 양수도 거래의 대상물인 '고객 계약'은 기존 고객들에게 관련

Text 서비스를 계속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고객과 관련된 모든 권한·권리와

Text 이익, 고객명세, 가격명세 및 계약관련정보가 포함된 고객과의 계약관계에

Text 대해 재산적 가치를 평가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여 획득한 '권리'에 해당하며

Text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함

^{Table} 예규 부가가치세-1006 (2011.08.30.)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고객관계(고객과의 계약관계를 포함한 고객과 관련된 모든 권한·권리와 이익, 고객명세, 가격명세 및 계약관련정보 등)를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고객관계를 영업권으로 보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Table 판례 서울행정법원 2007.04.30.선고2007구합863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고 고객관계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양도대가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Text O 납세자 주장

Text - (선급비용 성격) '고객 계약'의 양도는 사업양도가 아니므로 법인세법상

Text 영업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감가상각 대상이 되는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Text 않는 것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되는 것이므로 손금에 포함되고, 선급비용

Text 성격으로 계약기간인 3~4년을 근거로 2년 6개월 동안 균등하게 손금산입함

Text - 조사법인은 국외사업자인 AAA(미국법인) 로부터 곧바로 고객계약 무형자산을

Text 양수하였고, 국경 간 공급은 대리납부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며, 조사법인은

Text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52조 규정에 따라 조사법인은

Text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임

Text 다. 핵심 증거자료 확보 및 처분 유지

Text (**(재판매계약 검토)** '계약이전약정'은 AAA(미국법인)를 대신하여 조사법인이

Text 클라우드 서비스를 한국 고객에게 재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재판매

Text 계약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Text - 구조개편 이후 조사법인이 AAA(미국법인)와 체결한 '재판매계약'에 따라 국내

Text <mark>고객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재판매자로 선정되었고, 재판매계약 2.1</mark>에

Text 서비스 공급자가 AAA(미국법인)에서 조사법인으로 변경된 내용을 확인함

Table

<Reseller Agreement 재판매계약>

Section 2 - Selection of Reseller

2.1 Selection. Subject to the terms and conditions set forth in this Agreement, Company hereby engages Reseller as its nonexclusive reseller of the Cloud Services in the Territory.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be construed to limit (i) Company's right to engage one or more additional resellers (on a global, regional or country basis) or to sell direct to third parties in the Territory; and (ii) Reseller's right to act as a reseller for other parties in addition to Company. Reseller shall contract directly with customers in the Territory for the provision of Cloud Services. To enable such provision of Cloud Services, Company shall provide the Cloud Services that will resell to customers in the Territory per terms and conditions set forth in this Agreement.

제2조 - 재판매자 선정

2.1 선정. 본 계약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회사는 재판매자를 계약지역에서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회사의 비독점 판매자로 선정한다. 본 계약의 어떠한 내용도 (i) 회사가 (전세계, 지역 또는 국가 단위)추가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재판매자를 선정하거나,계약지역 내에서 제3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권리, (ii) 재판매자가 회사 이외에 다른 당사자들의 재판매자로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재판매자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을위하여 계약지역의 고객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회사는 계약지역 내에서 고객들에게 재판매할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본 계약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판매자에게 클라우드서비스를 제공한다.

Text <mark>- 상기 재판매계약서 검토한 바, '계약이전약정' 발효일 이후부터 AAA</mark>(미국

^{Text} 법인)는 더 이상 기존 고객에게 해당 서비스를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고객

^{Text} 계약'에는 계약갱신권 또는 서비스 판매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Text - 재판매 계약과정에서 고객계약을 필수적으로 양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Text 고려할 때 사업의 양수과정에서 해당 사업의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Text <mark>이점 등을 감안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영업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mark>

Text - 또한, 고객 계약 양도의 경제적 실질과 사업 양수도 과정이 아니라도 유상

Text 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에서 규정한 감가상각대상

Text <mark>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한다는 아래 예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mark>,

Table 예규 법인 46012-124 (1998.01.16.)

다른 법인이 운영하던 특정사업부분을 양수하면서 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재산적가치가 있는 고객명단·거래처 관련정보 등을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으로 보는 것임.

Table 예규 서면법인-2016-6099 (2017.12.25.)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차량운반구를 인수하기 별도로 영업권을 평가한 금액을 지급하는 계약을 하고 그 영업권이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Table 예규 법인46012-571 (2001.03.17.)

법인이 <u>사업과 관련하</u>여 <u>유상으로 취득</u>한 도메인에 대하여는 <u>영업권으로 하여 내용</u> 연수를 적용함

Table 예규 제도46012-12622 (2001.08.09.)

법인이 상표·상호 및 인터넷 도메인명 등 타인에게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의 취득대가로서 지출하는 비용은 <u>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u>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자산으로 보는 것임

Text 계약 양수금액 361억원은 기타무형고정자산으로서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함이

Text 타당하므로 감가상각비를 재계산하여 13,857백만원을 손금불산입 함

Text < 기타무형자산 감가상각비 재계산 >

(백만원)

Table	구분	2020	2021	2022
	(당초) 임의상각비	1,204	14,460	14,460
	(수정) 기타무형자산상각비	602	7,230	7,230
	상각비 부인액	602	7,230	7,230

Text ○ (납기내 현금납부) 조사법인은 과세타당성을 인정하고 확인서를 작성하

Text 였으며, 조사종결 후 불복 없이 고지세액 52억원 전액을 납기 내 현금 납부함

Special

적출③

❖ 이전가격 (항목코드: 18003)

재판매거래 이전소득 조정

Text **1. 조사착안**

Text 가. 착안사항 도출 과정

Text < 거래구조 개편>

Table	구조 개편 전	AAA(미국법인)	\rightarrow	국내	거래처(최종	사용자)
	구조 개편 후	AAA(미국법인) -	→ 조사법인 <i>→</i>	국내	거래처(최종	사용자)

Text - (변경 전) 조사법인은 '20.11월까지 AAA(미국법인)와 용역계약을 통해 국내 Text 고객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마케팅활동, 클라우드 시스템 Text 교육, 전문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총원가에 일정률(8%, 5%)의 이익을 가산 Text 하여 수취하였음(쌍방 APA에 따라 신고 인정)

Text - (변경 후) '20.12월 기업구조개편 이후 AAA(미국법인)와 재판매계약을 통해

Text 한국 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자로 변경되어 국내 고객과 직접 계약을

Text 체결하고 국내·외 데이터센터를 통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이하 '클라우드

Text 서비스') 재판매 기능을 수행

Text - 조사법인이 '20.12월 이후 AAA(미국법인)와 판매계약을 통해 수행하는

Text 클라우드 서비스 재판매 기능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국외특관자에

Text 지급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매입대가가 정상가격인지 여부 검토

Text O (개별기업보고서) 조사법인은 클라우드 서비스 재판매법인으로 국내

Text 고객에 대한 영업 활동의 대가로 AAA(미국법인)로부터 매출액의 2%를

Text 영업이익으로 보전받는 이전가격 정책을 운영함

Text < 개별기업보고서 정상가격 범위 >

Table

е	분석대상	귀속	정상가격 산출방법	정상 영업이익률(%)	조사법인 영업이익률(%)
	조사법인	'21	거래순이익률법 (영업이익율)	1.6~2.8~3.6	2.4
	조사립 인	'22	거래순이익률법 (영업이익율)	2.0~2.8~4.3	2.1

Text * APA 신청: 조사법인 영업이익률 1.75% ~ 3.14%

Text **2. 조사기법**

Text 가. 적출항목 조사 방법

Text

○ **(이전가격)** 기업구조 개편 전후 영업이익률이 아래와 같이 변동이 있으나 Text 조사법인의 마케팅, 교육·전문 서비스 제공 등의 기능에는 달라진 점이

Text 없고, 구조개편으로 재판매 기능이 추가됨에 따라 판매업자로서 수행하는

Text 기능·위험이 달라졌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

Text < 영업이익 변동추이 >

(억원)

Table	변경 전					변경 후					
	주요 계정과목	2018	3.12	2019	9.12	2020	0.12	202	1.12	2022	2.12
	7110717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영 업 손 익	28	5.0%	39	4.6%	△98	△4.8%	90	0.7%	75	0.4%

○ (기능·자산·위험 분석) Text

Table

le			각 당사자	나별 부담
		구 분	AAA (미국법인)	조사법인
	수행	글로벌 사업 전략 및 컨셉 개발	$\sqrt{}$	
	기능	글로벌 인프라 전략, 설계 및 지침		

Ta

👝			I	
Table		기술 및 제품 개발		
		글로벌 판매 및 마케팅 전략 개발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가격 책정 전략		제한적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고객 계약		
		교육 및 전문 서비스 개발	√	
		현지 사업 개발		
		현지 판매		
		현지 계약 체결		
		현지 APN 파트너 지원		
		현지 마케팅 서비스		
		파트너 등 고객지원 (베이직, 프리미엄 및 엔터프라이즈 지원)	$\sqrt{}$	
		현지 교육 및 전문 서비스 계약, 제공		$\sqrt{}$
		제품 개발 위험	$\sqrt{}$	
	-1-1	상업적 및 사업 위험(시장 위험)		제한적
	관리 위험	제조물 책임 위험		제한적
	71 🛱	신용 및 추심 위험	제한적	
		외환 위험	제한적	
	.1.0	일상적 사무공간 및 장비	$\sqrt{}$	
	사용 자산	운영 노하우, 특허, 소프트웨어 코드, 지적 재산권 권한	$\sqrt{}$	
	기년	상표, 상호, 브랜딩, 고객 계약		

○ (비교대상업체 선정) 조사법인이 이전가격 검증 시 벤치마킹한 업종인 Text Text 자료처리·호스팅·포털 및 기타 인터넷정보 서비스업종을 대상으로 비교대상 Text 업체 선정하여 정상가격 검토하고, 과거 조사 시 사용한 정량기준 등을 합리적인 정상가격 검토

Text ○ (인터뷰 실시) 조사법인과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면서 동일·유사한 기능을 Text 수행하는 국내 비교대상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부서별(#개 부서, ##명) Text 인터뷰 실시한 바, 기업구조개편 전·후의 기능에 차이가 없음을 확인함

Text - 그러나 영업이익률은 변경 전 보다 낮기에 조사법인과 유사한 업종을 영위 Text 하면서 동일·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국내 비교대상 업체를 선정하여 정상 Text 영업이익률을 산정한 결과 '20~'23년 귀속 소득조정금액 219,884백만원

Text 익금산입하고자 함

Text < 이전가격 비교대상업체 선정 과정 >

Ta

able	구분	선정 기준	대상기간	제외	선정	
	업종	모집단(KSIC-9 코드) J58200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62000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J63100 자료 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2019 ~ 2023	-	1,203	
	1	5개년 중 1개 연도라도 감사의견 적정이 아	605	598		
	2	5개년간 1개 연도라도 영업손실 발생한 업	304	294		
	3	5개년 평균 R&D비용/매출액 5% 초과	73	221		
	4	5개년 평균 매출액 대비 재고비율 5% 초고	36	185		
	5	5개년 평균 특관자와의 거래비율(매출, 매입)	57	128		
	6	6 질적검색				
			46			

Text < 정상가격 소득조정 >

(% 배마원)

Table

						(,	/0, 백인권/
	구 년	<u> </u>	2020	2021	2022	2023	합계
	- A.I	매출액	90,150	1,347,857	1,963,339	2,155,828	5,557,174
	조사 법인	영업이익*	4,145	93,047	131,527	108,332	337,051
		영업이익률	2.02	2.06	2.07	2.16	
콰作드	정상가	상위값	8.23	9.50	9.78	9.26	
재 판매	격	중위값	4.60	6.90	6.70	5.03	
거래	범위	하위값	2.59	2.79	3.22	2.76	
	조	정여부	여	여	여	여	
	=	조정률	2.58	4.84	4.63	2.87	
	조정	금액 소계	2,139	65,190	90,775	61,600	219,884

Text ★ 한국 내 클라우드 재판매 거래분 구분손익에 따른 영업이익(손금불산입한 주식보상비용 반영)

Text 나. 적출항목 관련 법령 검토

Table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

- ① 과세당국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 ② 과세당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제8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같은 정상 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해서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 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 ③ 납세자가 제2조제1항제3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Text 다. 명백한 과세근거로 성공적 처분유지

Text ○ 조사법인은 조사팀에서 제시한 정상가격의 적정성을 인정하고 확인서를

Text 작성하였으며, 조사종결 후 불복 없이 당초 APA 신청분으로 과세분에

Text 대해 MAP(상호합의) 신청

Special

적출4

❖ 과다경비 등 부인 (항목코드: 11204)특수관계법인의 임차료 등 공통비용 대신 부담

Text **1. 조사착안**

Text 가. 착안사항 도출 과정

Text ○ '21년 현재 사업장소로 이전하면서 건물 4층~18층을 임차하고 국내특관자 Text ACC, ASS 등에 전대한 사실이 부동산임대차공급명세서로 확인됨

Text **2**. 조사기법

Text 가. 적출항목 조사 방법

Text ○ (안분내용 확인) 임차료 및 관리비 등을 적정하게 안분하여 국내특관자에 Text 청구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층별 배치도 및 청구액 계산내역 등 자료요청

Text - ACC와 ASS의 전대계약서 상 전대비용을 소속 직원수로 안분하여 매월 Text 수수료금액을 청구

Text · 전대비용 : 시설비, 감가상각비, 인프라, 통신비, 물품 및 운송료 등

Text · 안분계산 : 해당 기간 동안 임차인 직원수/전체 직원수

Text (이 (미청구비용 계산) 조사법인은 현재 사업장으로 '21.8월에 이전한 후 '21.9.

Text ~ '21.12.월분 임대료 및 관리비 5,601백만원을 관계사 ACC에 미청구한

Text 사실이 확인되어 미청구 공통비용을 직원수로 안분계산한 949백만원을

Text 이금산입함

Text < 임차료 미청구 내역 >

(백만원)

Table	임 차료	직원		미청구 임대료 등
		조사법인	ACC	
	5,601	691	141	949